創立精神: 仁術濟世. 仁德濟世

教育理念: 自然保護 . 生命尊重 . 人間사랑

校 訓

正直 / 誠實 / 勤勉

회 람

【학사관리과】

교내) 3015

담당 : 김주현(planzoo@inje.ac.kr)

학사 제2017-0542호

2017. 9. 14.

수 신: 전체 단과대학장

제 목 : 공인결석 처리 관련 안내

- 1.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공인결석 문의가 많아 아래와 같이 학사운영규정을 안내하오니 학사지도 및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.
  - 가. 제18조(공인결석) 제1항 제8호의 2 : 졸업예정자(마지막 학기 등록 자)의 조기취업(인턴, 국비교육 등 포함)으로 인한 결석 : 해당기간
  - ※ 졸업예정자 : 수강신청학점 + 취득학점(세부전공 포함)외 모든 졸업 요건에 충족하는 자(8학기(마지막 학기) 등록으로만 판단하면 안됨)
  - 나. 제32조(성적산출) 제3항: 기말고사 불응 시에는 당해 교과목 성적은 인정되지 아니한다. <u>다만, 제18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29조, 제</u> 30조 또는 **시험 외 성적평가 방법으로**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.
  - 2. 공인결석 인정 범위 및 증빙서류
    - 가. 성적증명서(졸업예정자 확인용)
    - 나. 4대 보험 가입 확인서(가입기간 명기)
    - 다. 재직(계약) 증명서(재직기간 명기)
    - 라. 국비지원교육 이수 관련 증빙서류(이수 기간 명기)
    - 마. 공무원 등 -> 관련 증빙서류(재직기간 명기)
  - 3. 유의사항
    - 가. 공인결석 인증은 퇴직 후 또는 학기말까지 재직시는 학기말에 신 청하고 증빙서류의 기간을 확인하여 승인해야 합니다.
    - 나. 교육부 학사관련 기록물 보관 기준에 따라 학사관리 바랍니다.
      - 1) 학점 및 성적관리 : 10년
      - 2) 학생출결관리 : 3년. 끝.

## 교 무 처 장「직인생략」